

NEWS LETTER

2025-03-31

Legal Issue

-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
-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MINWHO News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 양진영 변호사,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

Business CASE



Legal Issue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

김경환 대표변호사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1건, 메타에 대해 2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함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아주 간단하다. 어제 내가 쿠팡에서 노트북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구글·메타에 전송돼 오늘 내 눈앞에 노트북 광고가 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간략한 한 줄의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그 뒷단에서는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가 얹히고설킨 있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구글·메타의 회원인 나의 기기에 식별자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구글·메타와 공유된 상태여야 했다. 일종의 식별용 매개체가 사전에 확보돼 있어 익명의 온라인 활동정보가 나의 활동정보로 식별되고 분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내가 방문하는 외부 웹사이트나 앱에 구글·메타의 코드가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를 통해 내가 그 외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을 방문해 상호작용한 온라인 활동정보가 구글·메타로 전송 가능했던 것이다. 참고로 메타의 경우에는 일명 '비즈니스 도구' 예컨대 픽셀, SDK, 페이스북 로그인, 소셜 플러그인이 여기에 동원됐다.

즉, 구글·메타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한 외부 웹사이트·앱, 식별용 매개체가 구글·메타와 사전 공유된 나의 기기, 이 3요소가 합작함으로써 '내가 어제 검색하고 오늘 보는 노트북 광고'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뒷단의 사정을 이용자인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대리하면서 처음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인지했고, 재판부에 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기술적인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태정보의 수집이 별다른 공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받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런 방식의 맞춤형 광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었다. 맞춤형 광고 생태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이런 개인정보 처리의 프로세스를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돈이 되는 데이터다. 돈을 쓰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개개인을 분석해 지출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가 소외되고 선택권을 잃은 채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인격 자체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준다. 온라인 활동이 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이슈는 단순히 개개인을 위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과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 자체의 생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사회적 습관과 정보처리 관행을 길러가는 데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김도윤 변호사

한 스타트업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상표 출원까지 마쳤지만, 등록 전 다른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해당 스타트업은 상표 출원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경쟁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에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브랜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도용이나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권리이기에(상표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여도 출원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게 곧바로 상표권자가 가지는 대세적·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출원 상태에서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바로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상표 출원 이후 등록되기까지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출원 후 등록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출원 상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경쟁사가 자신이 어렵게 고안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할 동안 이를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면 정작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출원 후 등록 전 기간 동안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상표권 출원 사실 통지'이다. 상표법 제58조는 상표 등록 이전이라도 상표 출원인은 제3자에게 상표 출원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는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만약 상표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 경고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1항). 경고장에는 출원상표, 출원일, 상표출원번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 출원 사실을 알리는 이유,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 등에 관한 내용 정도가 포함되면 적절하다.

또한 위와 같은 서면 경고를 한 상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2항).

스타트업이 상표, 브랜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상표법 제58조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심사 중임을 알리고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어, 상표 출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출원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던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고 이후 설정등록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까지의 공백 기간은 스타트업의 상표, 브랜드 보호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른 경고장 발송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방심하지 않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하여, 어렵게 고안한 자신만의 상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권장한다.



김도윤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kimdy@minwho.com

MINWHO NEW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없었고, 그러한 의무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자분이었는데, 본 법인은 해당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①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고 ②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미 이행되고 있었으며, ③ 사고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 공정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를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



양진영 변호사,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5. 3. 14.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AI 기술 발전, 다양한 플랫폼 성장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맞는 새로운 법제 및 정책, 행정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체 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포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주최한 행사로 소비자권익포럼의 공동대표 고형석 교수가 '소비자법, 정책 및 행정체계 개편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소비자권익포럼 명예이사장,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임교수 겸 변호사,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술 측면의 발전으로 인한 시장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업무사례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도출함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례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3.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무단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자에 대한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 요구, 검찰의 구약식 결정을 도출한 사례
4. 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 회사를 대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형 부과 처분을 도출한 사례
5.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63% 감액 및 불항소 합의 결과 도출
6. 플랫폼 회원 간의 e상품권의 거래 및 실물자산 교환에 사용되는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7.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개발사의 불완전한 이행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피해 해결의 실질적 방법 관련 법률자문
8. 데이터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데이터 공급계약 관련 법률자문
9. 의료기 회사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황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과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자문
10. 신주인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투자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해지하기로 합의한 회사에 투자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등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